	법인회의비 지급 규정	문서번호	3-2-20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		
		페이지	1/1	관리부서	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의담학회 회의에 따른 회의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회의비라 함은 학교법인 의담학회에서 공식 절차에 따라 소집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, 법인관련 직원에게 지급하는 거마비, 회의비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.

제3조(지급요건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

1.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 및 직원
2. 이사장이 인정하였을때

제4조(절차) 회의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록을 제출하고 지급대상자의 금액을 명시하고 결제를 득해야 한다.

제5조(금액) 회의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정하고, 합리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